

의정부지방법원 2014. 11. 18 선고 2014가단10938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2014. 10. 28.

판결 선고2014. 11. 18.

주 문

1. 피고 B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D 전 612m² 지상 목조 스테트지붕 단층농가주택 28.03m²를 철거하고,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1.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28.03m²를 인도하라.
2.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7, 8, 9, 10, 11, 7.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30m², 별지 도면 표시 9, 10, 12, 13, 9.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다) 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차양 8m², 별지 도면 표시 14, 15, 16, 17, 14.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라) 부분 지상 목조 및 파이프조 계사 8m², 별지 도면 표시 18, 19, 20, 21, 22, 18.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마) 부분 지상 시멘블럭조 및 목조 판넬지붕 및 경사지와기붕 2층 주택 및 매점 200m², 별지 도면 표시 21, 22, 23, 24, 21.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(바) 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비닐지붕 차양 4m²를 철거하고, 경기 가평군 D 전 612m² 중 별지 도면 표시 1, 6, 7, 18, 19, 25, 26, 27, 28, 29, 30, 4, 3, 2, 1.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사) 부분 583.97m²를 인도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경기 가평군 D 전 612m²(이하 '이 사건 토지')의 소유자이고,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1.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지상 목조 스테트지붕 단층농가주택 28.03m²의 소유자이다.

나.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도면 표시 7, 8, 9, 10, 11, 7.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나) 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30m², 별지 도면 표시 9, 10, 12, 13, 9.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다) 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차양 8m², 별지 도면 표시 14, 15, 16, 17, 14.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라) 부분 지상 목조 및 파이프조 계사 8m², 별지 도면 표시 18, 19, 20, 21, 22, 18.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마) 부분 지상 시멘블럭조 및 목조 판넬지붕 및 경사기와기붕 2층 주택 및 매점 200m², 별지 도면 표시 21, 22, 23, 24, 21.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(바) 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비닐지붕 차양 4m²(이하 '나.항 기재 구조물들'이라 한다)가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피고 B에 대한 청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D 전 612m² 지상 목조 스테트지붕

단층농가주택 28.03㎡를 철거하고,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1.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28.03㎡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C에 대한 청구

(1)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, 피고 C은 인정사실 나.항 기재 구조물들을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C에게 위 구조물들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나.항 기재 구조물들은 피고 C의 소유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.

(2) 판단 갑 제3, 5, 6,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나.항 기재 구조물들은 E 펜션, 캠핑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, 피고 C은 E 펜션, 캠핑장의 대표자로서 위 펜션, 캠핑장을 예약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그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지급받아 오면서, 위 펜션, 캠핑장을 운영하여 온 사실, 피고 C의 부모인 F, G이 위 나.항 기재 구조물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.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, 피고 C은 위 나.항 기재 구조물들의 소유권자이자 공동점유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나.항 기재 구조물들을 철거하고,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6, 7, 18, 19, 25, 26, 27, 28, 29, 30, 4, 3, 2, 1.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사) 부분 583.97㎡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주완

별지